

1. 의결주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세법 해석요청에 대해 신속한 회신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를 보완하고, 고액의 관세 포탈범 명단공개를 위한 공개내용·공개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 조사·부과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하여 전송요구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세관의 물품검사에 의한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관세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안 제1조의3)

관세법 해석에 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법 해석 및 회신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하나,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안 제141조의5)

관세포탈범의 성명·나이 등을 5년간(상습범은 10년간) 공개하고, 세액미납 또는 형 집행 미완료시 계속 공개하도록 하며,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안 제71조의2 등 신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우회덤핑 유형은 덤핑방지물품 공급국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외형이나 포장방법, 용도 등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우회덤핑 조사는 무역위가 담당하며, 부과요청인의 조사신청 이외 무역위의 직권조사 개시를 허용하는 한편, 조사신청 절차·제출 자료·조사 개시 및 이해관계인 협조요청 등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는 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하도록 함.

라.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141조의13 제2항, 별표2의2)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관세법 시행령」 별표 2의2)를 전송 가능하도록 함.

마.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안 제251의2조)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용기, 운반·운송수단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액을 설정함.

바.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263조의3)

관세청이 법무부·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게 마약밀수·유통
범죄이력자,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자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 가능하도
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조의4제2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을 “(장부 등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13조 단서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에는”을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하는”을 “국내에 도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입 후”를 “국내 도착 후”로, “위탁판매수입물품”을 “위탁 판매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입하는”을 “국내에 도착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등에서 수입하는”을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입하는”을 “국내에 도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입하는”을 “국내에 도착하는”으로 한다.

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제3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를 각각 “관세조사”로 한다.

제61조제4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로, “관보”를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연장하게”를 “추가하여 연장하게”로 한다.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 모두”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제65조제2항(중전의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와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3항 단서”를 각각 “제3항제2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3항 단서”를 “제3항제2호 단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5조제3항 단서”를 “제65조제3항제2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를 “제2항 및”으로 한다.

③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에서 정한 공급자가 아닌 공급자 및 해당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 다만, 특수관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제2항 단서에 따른다.

제67조제2항 중 “덤핑방지관세액은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덤핑방지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그 담보금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최종덤핑률을 기초로 산정한 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으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를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가.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나.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잠정조치가 없었다면 덤핑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경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덤핑

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각각 “덤핑방지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수락된 약속의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을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를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⑧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우회덤핑의 유형)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 공급국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용도 등을 변경(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행위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의 법 제84조에 따른 품목분류표 상의 품목 번호가 변경되는 지 여부는 관계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3(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한 자는 무역위원회에 경미한 변경을 통해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과 관련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나.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과 관련된 무역위원회 의결서 공개본

다.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을 한 자인지 여부

라. 우회덤핑 조사물품의 사진, 도면, 사양, 표준 등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마. 우회덤핑 조사물품의 공급국·공급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

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바. 우회덤핑 조사물품의 국내 동종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 생산자·생산량

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아.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우회덤핑 조사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우회덤핑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3. 신청인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3부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우회덤핑 조사물품

2. 조사대상 기간

3. 조사대상 공급자

②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정확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제7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우회덤핑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제71조의3제3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물품의 선정에 있어,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1조의5(우회덤핑의 직권조사) ① 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제71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이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그 즉시 결정 내용과 제71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우회덤핑 직권조사 개시 결정의 통지와 관보 게재 및

관세청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1조의4제4항 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1조의4제4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은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으로 본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회덤핑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수입물품에 대한 우회덤핑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제71조의6(우회덤핑의 조사) ①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4항 및 제71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71조의4 제4항 및 제71조의5제2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우회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방지관세에 대한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우회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우회덤핑 조사 및 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7(우회덤핑 조사의 철회 및 중지) ①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에 따라 개시된 직권조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제71조의8(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로, 같은 항 단서의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8제1항 전단 및 제71조의3제3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의 우회덤핑 조사”로, “덤핑방지”는 “우회덤핑방지”로,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는 “제71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71조의8제1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 있는 후”는 “진술 또는 협의가 있는 후”로 본다.

② 관세청장은 제71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입자 등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④ 관세청장은 제71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1조의9(우회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2에 의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71조의8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공급자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제71조의4제4항 및 제71조의5제2항에 따른 관보게재일 이후 수입되는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1조의10(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7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된 때
 2.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한 때
 3. 제71조의6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4. 제71조의6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5. 제71조의7에 따라 조사신청 철회 또는 직권으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5조제4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무역위원회는”으로, “관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연장하게”를 “추가하여 연장하게”로 한다.

제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 모두”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 중 “수출자”를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수출자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및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3항 단서”를 “제2항제2호 단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79조제3항”을 “제79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②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에서 정한 수출자가 아닌 수출자 및 해당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수출국의 신규수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1.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적용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다만,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 수출자

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 다만, 특수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최종판정이 있기”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가.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나.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잠정조치가 없었다면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경우

제83조제2항 중 “상계관세액은 잠정상계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상계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그 담보금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종상계관세율이 잠정상계관세율”을 “최종상계관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계관세액 상당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으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를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을 “상계관계의 부과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각각 “상계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수락된 약속의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각각 “상계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부과 중인 상계관세율 및 시행 중인 약속”을 “시행 중인 상계조치”로,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상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정보에 의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를 “정보를 바탕으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⑧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기준가격 대비 수입가격 하락률(이하 “하락률”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아래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하락률	특별긴급관세액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하락률 - 10퍼센트포인트) × 30퍼센트
4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9퍼센트 + (하락률 - 40퍼센트포인트) × 50퍼센트}
6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19퍼센트 + (하락률 - 60퍼센트포인트) × 70퍼센트}
75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29.5퍼센트 + (하락률 - 75퍼센트포인트) × 90퍼센트}

제95조제1항 중 “편익”을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을 “편익관세를 적용받을”로, “가, 나 및 다”를 “가 및 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3조제1항”을 “법 제83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8조제1항 중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를 “이 절”로, “이 조에서”를 “이 절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84조 각 호를 수정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를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제106조제7항 중 “제4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적용기준 및 품목분류표”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각각 “협약”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3항”을 “법 제83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41조의5의 제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체납자 명단공개”를 “명단공개”로, “체납된”을 “체납하거나 포탈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주소·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

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제141조의11제1항제4호 중 “고액·상습채납자”를 “자”로 한다.

제141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13(본인의 과세정보 전송요구 등)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제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1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의2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과세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⑥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3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⑦ 법 제116조의6제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법 제116조의6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5.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⑧ 법 제11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⑨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⑩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요구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4조 중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51조의2의 제목 “(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을 “(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46조의2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검사한 물품
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운송하는 수단

제251조의2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항제1호: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1항제2호: 구매가격의 범위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

제2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3조의3(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외교부장관: 최근 10년간 해외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체포·구금 또는 수감되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2. 법무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가 있는 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나.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가 있는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로서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받은 개인의 성명·생년월일·처방일자·처방기관·제품명·수량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제38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의 수취인의 성명·주소, 배송일자 및 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접속기기·조회일시

제28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85조의3을 삭제한다.

제285조의6의 제목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제327조의3제4항”을 “법 제327조의3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27조의2제4항 또는 제327조의3제3항”을 “법 제327조

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한다.

제285조의7제1항 중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을 “법 제327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중 “법 제116조제1항제5호”를 “법 제1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6조의6제1항”으로 하고, 비고 제1호 중 “법 제1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법 제1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또는 제116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 번호 42의 과세자료명란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164조의2”로 하고, 같은 표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	관세청	매년 7월 31일
63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 거래 명세서 자료	관세청	매년 7월 31일
64	국세청	「법인세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및 선박 등의 임대료·사용료·인적용역 등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자료	관세청	매년 7월 31일
65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자료	관세청	매년 7월 31일
66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 중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 자료	관세청	매년 7월 31일
67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	관세청	매년 1월 31일,

		고서		7월 31일
68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관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6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에 해당하는 계약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를 “제15부터 제24호까지, 제41호, 제42호, 제53호,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마목 중 “제58호”를 “제58호,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제42호”를 “제42호,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법 제116조제1항 및 제6항 또는 법 제116조의6제10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 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1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1조의4제2항, 제13조, 제141조의13, 제28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85조의3, 제285조의6, 제285조의7제1항, 별표 2의2, 별표 5 제2호히목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의 개정 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11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시적 수출입 제한 금지에 따른 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4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51조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별로 구분한 구간에 따라 정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구간의 산정은 위반행위 별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다음 1)부터 4)까지에 따라 산정하되,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행위 별로 각각 부과한다.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1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2)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11회 이상 2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2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3) 제3호아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회 이상 10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0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301회 이상인 경우: 3구간

4) 제3호자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

회 이상 15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5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301회 이상인 경우: 3구간

라. 부과권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
우: 해당 업체의 등급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4) 법에 따른 행정조사 등의 결과,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위
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75의 범위

마. 라목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
경의 범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감경사유를 가진 부과대상자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바. 부과권자가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4호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의4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
생시킨 경우 부과권자는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2. 차수별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다.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라. 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마.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바. 법 제10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사. 법 제10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아.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자. 법 제135조제2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차. 법 제136조제3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카. 법 제1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타. 법 제1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제7항제4호				
파. 법 제139조(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하. 법 제1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1)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3)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3일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4)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5)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로부터 12시간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거. 법 제141조제1호(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너. 법 제141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더. 법 제141조제3호(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러. 법 제143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며. 법 제1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버. 법 제15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서. 법 제15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어. 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저. 법 제15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처. 법 제15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커.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터. 법 제16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펴. 법 제160조제4항(법 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5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허. 법 제16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고. 법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노. 법 제17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도. 법 제177조제2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로. 법 제17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모. 법 제180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7항제7호				
보. 법 제180조제2항(법 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7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소. 법 제180조제3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오. 법 제180조제4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조. 법 제182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초.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코. 법 제18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토. 법 제184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포. 법 제185조제2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호. 법 제186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구. 법 제187조제1항(법 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공장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에서 작업을 한 경우					
누. 법 제192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두. 법 제193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7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루. 법 제194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무.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건설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부.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수. 법 제196조의2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우. 법 제19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주. 법 제19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25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추. 법 제20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쿠. 법 제20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투. 법 제20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푸. 법 제20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제6항제2호				
후. 법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그.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7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느. 법 제21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드. 법 제216조제1항(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르. 법 제216조제2항(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1)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2)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3)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므. 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브. 법 제2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스. 법 제221조제2항에서 법 제215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으. 법 제2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즈. 법 제2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츠. 법 제228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크. 법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1호				
1)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트. 법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프. 법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흐. 법 제24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기. 법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니. 법 제254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10만원	25만원	50만원	50만원
디. 법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리. 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경우						
미. 법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6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비.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7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 법 제216조제3항(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지.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치. 법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2호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키. 법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7조 제3항 단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티. 법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는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3호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피.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	법 제277조 제3항제4호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히. 법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77조 제5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3. 구간별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가. 법 제13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중 과실로 여객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여객명부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여객명부에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10만원	50만원 25만원	100만원 50만원
나.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경우로서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3)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10만원 25만원 5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라. 법 제157조의2를 위반한 경우 1)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2)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마. 법 제215조(법 제219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25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바. 법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 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 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사.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아. 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통관목 록 제출건수 별 오류율이 1퍼센 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2)부터 4)까지에서 같다) 2) 물품가격 기재 오류 3) 물품수신인 성명 기재 오류 4)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 기재 오류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자.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 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하 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76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적재 물품을 수출한 자 또는 다른 선 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 업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법 제277조 제7항제1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p>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p> <p>1)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추가제출. 다만, 항공기로 수입한 화물은 입항편 별 제출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p> <p>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p> <p>3) 과적단속 결과 중량이 틀린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오류 외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오류</p>				
--	--	--	--	--

비고

자목의 위반행위의 경우 해당 적재화물목록에서 오류가 발생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한다.

1. 오류 건수가 11건 이상 50건 이하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2배
2. 오류 건수가 51건 이상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3배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위반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p>가.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법 제277조 제1항</p>	

1) 제31조의5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4천만원
2) 제3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5천만원
3) 제31조의5제1항제8호 또는 제11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천만원
나. 법 제37조의4제6항에 따라 미제출된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2항	(1 + 지연기간/30) × [가목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금액]

비고

1.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각 부과금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1)부터 3)까지 중 가장 높은 과태료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경우 지연기간은 30일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지연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5.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법 제277조의2 제5항 본문	
가.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없이		

<p>세관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p> <p>1)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p> <p>2)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p>		<p>금품 상당액의 2 배</p> <p>금품 상당액의 3 배</p>
<p>나.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p> <p>1) 2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p> <p>2)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p> <p>3)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p>		<p>금품 상당액의 2 배</p> <p>금품 상당액의 3 배</p> <p>금품 상당액의 4 배</p>
<p>다.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법 제 277조의2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p>		<p>금품 상당액의 5 배</p>